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금융·비금융조치 근거 마련〉
■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897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병 권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5
1. 제정안의 입법 배경 및 제정 필요성 검토	5
2. 제정안의 구성 체계	9
3. 주요내용별 검토	10
가. 금융 조치	10
1) 지급정지 등(안 제4조~제8조)	10
2) 전자금융거래제한(안 제9조)	15
3)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에 대한 임시조치(안 제3조)	17
4) 자료제공 특례(안 제11조)	19
나. 비금융 조치: 전화번호 이용 중지 (안 제10조)	22
다. 신고(안 제12조~제15조)	2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민회의원 등 27인
2. 제 안 일 : 2024. 9. 11.
3. 회 부 일 : 2024. 9. 23.

II.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인터넷 도박이 성인은 물론 청소년 사이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은 성인 인증 절차도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쉽게 도박에 빠져들고, 이로 인해 친구 사이에 사채를 쓰거나 사기가 벌어지고, 범죄조직에 가입하는 등 더 큰 피해와 불법행위로까지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형법」이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과 같은 법으로는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을 통한 사행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방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해서는 인터넷 도박 운영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같이 도박 자금 입금 및 출금에 사용되는 계

좌를 지급정지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운영자의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해당 계좌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도박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하며,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불법온라인사행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정부의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책임 등을 정하고,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온라인사행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 등의 정의를 둠(안 제2조).

다.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불법수익 등을 얻는 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이용자 계좌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불법수익이 송금·이체된 다른 금융회사에게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함(제4조).

마.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회사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조).

바.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고, 해당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지 않도록 함(안 제9조).

사.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함(안 제12조).

자. 누구든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통합신고대응센터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차.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를 신고한 도박이용자가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도박이용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입법 배경 및 제정 필요성 검토

- 불법도박의 추정 매출규모는 2022년 102.7조원으로, 전자기기과 온라인 도박 시장의 성장으로 2019년 81.5조원에 비해 약 26%로 증가한 것임.

< 연도별 불법도박 매출규모 추정액 >

(단위: 억원)

연도	2008 (운영자)	2012 (운영자)	2016		2019 (이용자)	2022 (이용자)
			운영자	이용자		
온라인	320,000	170,985	250,355	196,180	241,611	375,059
오프라인	217,028	580,489	587,467	512,754	573,863	652,177
합계	537,028	751,474	837,822	708,934	815,474	1,027,236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 특히, 최근 5년간 모니터링 건수 중 ‘온라인 도박’ 모니터링 건수가 압도적인 비중(99%)을 차지하고 있음.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프라인상의 도박이 급속히 온라인공간의 도박장으로 도박의 장소가 이동하는 경향이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더 가속화된 것으로 추정됨.¹⁾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 경찰의 불법도박 모니터링 추이 >

(단위: 건)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온라인 도박	25,521	16,476	20,928	18,942	26,957	108,824(99%)
현장 도박	166	186	217	205	273	1,047(1%)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 도박 등 사행행위는 개인에게 우울증, 불안증세 등의 정신적 건강문제를 유발하고, 재정적 손실과 사회적 고립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관련 범죄의 증가, 가족 붕괴, 사회적 불안정 증가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며, 불법사행행위는 도박 중독 유병률이 더 높고, 도박비용 마련 등의 이유로 신용 불량 경험, 재산 및 폭력 범죄 등의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합법사행행위에 비해 높음.²⁾

○ 특히, 불법온라인사행행위는 접근 및 이용의 용이성, 익명성, 온라인을 통한 유인 전략, 사회적 고립 유발 등의 특성으로 인해 도박중독 등의 문제를 더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남.³⁾

□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형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이하 ‘사행행위규제법’)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마사회법」 등 각 개별법으로 불법사행행위를 규제 및 처벌하고 있음.

2) 한국행정연구원(2017.7.), 『불법사행산업 근절 종합대책방안 마련 연구』, 21쪽

3) 백지연·정유숙·오윤희, 「노출 경로에 따른 청소년 도박 주요 증상」, 정신의학 연구(Psychiatry Investigation)

< 불법 사행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

구 분	내 용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사행행위 관련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로 사 행행위를 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 특례 규정
개별 법률	관광진흥법(사설 카지노) 한국마사회법(사설 경마) 경륜·경정법(사설 경륜·경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사설 복권) 국민체육진흥법(사설 스포츠 도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사설 소싸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불법 사행성게임장, 불법 온라인 도박) 등

- 아울러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온라인도박에 대한 단속 및 수사,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온라인사행행위에 대한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기관별 대응>

기 관	대 응
검찰 및 경찰	수사 및 단속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사이트·도박광고에 대한 신속 심의, 포털, SNS 등에 대 한 삭제, 차단 요구·명령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서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감 시 및 차단·수사의뢰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및 사이트 내 게재 광고 감시, 차단·삭제
여성가족부	불법도박 사이트, SNS 광고·홍보 게시물 등 점검,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추진

□ 이에 제정안은 온라인 금융거래를 기반으로 하고 적발이 어려운 불법온라인사행행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거래에 대한 조치,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 활성화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봄.

□ 다만, 불법사행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기존의 법률과의 관계, 각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의 중복가능성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제정안의 구성 체계

- 제정안은 총 19개 조(條)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됨. 본칙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불법온라인사행행위를 예방·적발하기 위한 금융조치 관련 사항(안 제3조~제9조, 제11조), 비금융조치 관련 사항(안 제10조), 불법온라인사행행위 적발 제고를 위한 신고 관련 사항(안 제12조~제15조)과 처벌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체계 >

구 분	내 용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본 칙	제1조(목적)	총 칙
	제2조(정의)	
	제3조(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금융조치
	제4조(지급정지의 신청 등)	
	제5조(지급정지)	
	제6조(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제9조(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10조(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11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금융조치
	제12조(불법온라인사행산업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신고
	제13조(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에 대한 신고)	
	제14조(포상금)	
	제15조(도박이용자에 대한 형의 감면)	
	제16조(국제협력)	기타
	제17조(벌칙)	처벌
	제18조(양벌규정)	
	제19조(과태료)	
부 칙		

3. 주요 내용별 검토

가. 금융 조치

1) 지급정지 등 (안 제4조~제8조)

□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의 절차·요건, 이의제기 및 종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4조(지급정지의 신청 등) ①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불법수익을 송금·이체한 행위와 관련된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불법수익을 특정하여 해당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 불법수익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 및 불법수익의 통지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3조에 따른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제 정 안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한다)

2. 불법수익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3. 금융감독원

4. 수사기관.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절차·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누구든지 제5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된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종료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의 개시

4. 질권(質權)의 설정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해당 계좌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전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전

제 정 안

받은 자금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미 인출되어 계좌에 남은 잔액이 불법온라인사행산업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이의제기 사실을 즉시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제5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나. 제5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다. 제5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절차가 개시된 경우

라. 제5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3.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명의인과 수사기관 또는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① 금융감독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

제 정 안

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 금융회사 및 명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제8조 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제한이 해제된 때에는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수사기관, 금융회사 및 명의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정안은 유사 입법례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⁴⁾의 지급정지 조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가 불법수익을 송금·이체한 행위와 관련된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지급정지 신청),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이나 다른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이 있거나,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정보제공 등이 있으면, 해당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계

4) 【참고자료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중 지급정지 관련 규정

좌의 명의인, 관련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 등에 통지하도록 함(지급정지).

또한,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제한으로 인한 계좌 명의자의 불이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명의인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제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

지급정지 조치 전에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절차와 체납절차, 질권(質權) 설정 등이 이루어졌거나,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불법 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이 각각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제한을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지급정지 등의 종료).

그 외에, 지급정지 계좌 내 불법수익의 법률적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이후 환수 등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에 대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절차와 체납절차, 질권(質權) 설정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 지급정지 제도의 도입은 i) 경제범죄의 경우 형벌보다는 범죄자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범죄억제수단이 될 수 있고, ii)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은 이용자와 운영자 간의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금융계좌 입출금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급정지 조치는 이러한 신뢰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iii) 최근의 불법도박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른 방식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달리 도박이용자는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협조관계에 있어 입금 즉시 타 계좌로 이체 후 출금하는 사례 및페이팔 등 다른 온라인 결제 수단의 존재에 비추어 지급정지 제도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 금융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재산권 행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일 수 있으므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는데, 도박이용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불법사행산업 운영자가 이용한 계좌로부터 자금이 이체된 모든 계좌를 불법사행산업 이용계좌로 정의함으로써 불법계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전자금융거래제한(안 제9조)

□ 안 제9조는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 제9조(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① 금융감독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 금융회사 및 명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제한이 해제된 때에는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수사기관, 금융회사 및 명의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가 안 제5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되는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하도록 할 의무를 금융감독원에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것이 확인된 계좌만을 규제하는 경우에는 모든 범죄수익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은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의 운영원천인 범죄수익 거래를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봄.

○ 다만, 보이스피싱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긴급히 예방할 필요가

있었던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달리, 제정안에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규정한 것은 범죄단속 및 수사의 용이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전자금융거래 및 전화 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여타 일반범죄의 수사·단속에서는 그러한 권한이 폭넓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다른 범죄에 대한 단속 권한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3)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에 대한 임시조치(안 제3조)

- 안 제3조는 금융회사가 자체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계좌가 불법수익을 얻는 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면 해당 이용자의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체, 송금, 출금지연, 일시 정지 등의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함.

제 정 안
제3조(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불법수익을 얻는 의심거래계좌(이하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이용자의 계좌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의심거래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 제정안은 불법온라인사행행위 이용계좌 뿐 아니라 정상계좌 등 이용자의 계좌가 불법온라인도박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례⁵⁾에 따른 것인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므로,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조치⁶⁾를 통해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피해의심거래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불법온라인사행행위의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계좌가 불법수익을 얻는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의심거래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⁷⁾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6., 2024. 2. 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6) 전자금융거래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

7) 타인 계좌를 도용하여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조치를 통해 계좌도용 여부는 확인할 수 있으나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인지 여부(해당 계좌의 자금이 불법수익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운영자 또는 운영자와 협조관계에 있는 도

- 그 외에, 법제적으로는 임시조치의 대상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가 아니라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의심거래계좌”이므로, 명확성 제고를 위해 조제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자료제공 특례(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등이 온라인불법도박 이용계좌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 사항 등을 통지하기 위해 타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 등에 관련 정보를 요청·제공하거나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 정 안
제11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①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은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제3항, <u>제16조</u>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요청·제공하거나 공고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공유하여야 한다.

박이용자의 계좌를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조치를 통해서는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금융거래정보, 주민등록자료, 개인신용정보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⁹⁾ 및 「전자금융거래법」¹⁰⁾, 등에 따라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면 제공 등이 금지되므로, 제정안은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간에 해당 정보를 요청·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한편, 전자금융거래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불법도박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다만, 다른 범죄에 대한 단속 및 수사 권한과의 형평성 문제와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중간 생략)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밑줄 부분은 단순위헌(2020헌가5, 2022.2.24.)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등

10)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용자의 인적 사항
2.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 유사입법례로, 2024년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자금융 거래를 기반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간에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음.¹¹⁾

<유사입법례>

법명	관련 조문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의2제2항·제3항, 제16조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요청·제공하거나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8. 3. 13., 2023. 5. 16.>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③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27.>

11) 2024년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자금융거래를 기반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간에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제15조제3항을 신설하였음.

나. 비금융 조치: 전화번호 이용 중지(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수사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정통부장관’)에게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0조(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등에 대한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를 신속히 차단하여 불법온라인도박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근절하려는 취지이며,

전화번호 사용이 중지되는 자가 선의의 피해자일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등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함께 마련하고 있음.

- 유사입법례로, 「전자금융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유사 입법례>

법명	관련 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사람은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제13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부업법	제9조의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시·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경우 광고를 한 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명	관련 조문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 망법	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① 경찰청장·검찰총장·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첫째,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안에 마련하는 것 외에, 과기정통부장관이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마련하여야 함.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¹²⁾은 과기정통부장관이 「대부

1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연결되어 있는 착신회선의 전기통신번호를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2018. 12. 11., 2022. 6. 10.>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3.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5.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수사기관의 장이 제32조의4제1항의 위

업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기통신번호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 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의 사유로 동 제정안에 따른 요청을 추가하여야 할 것임.

□ 둘째, 법제기술적 측면에서 i)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하는 주체를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 등의 장인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으로 수정하고,

ii) 안 제2조에서 “이용자”를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안 제10조 중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를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사람”으로 수정하는 등 법적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반사실을 확인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중지하기 전에 해당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행정기관, 사유 및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11.>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신고(안 제12조~제15조)

-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불법온라인사행산업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에 대한 신고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형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 정 안
제12조(불법온라인사행산업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①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관한 신고의 접수·상담 2.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관한 제보의 접수·처리 3.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및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의 정보제공 4.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5.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 등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로의 정보 전파 6. 그 밖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대응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경찰청장은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에 대한 신고) ① 누구든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제 정 안

1. 불법온라인사행행위가 이루어진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가 게시된 자료
2.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운영자가 입금을 요구한 문자 등(「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가 적시된 자료
3. 그밖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존재를 확인할 경우 지체 없이 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될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④ 신고의 방법·처리절차·증빙자료의 접수와 확인 및 그 밖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포상금) ① 금융위원회는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를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한 자에게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도박이용자에 대한 형의 감면)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한 도박이용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도박이용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불법도박 이용자는 돈을 잃고 재산상 손실 겪은 피해자인 동시에 「형법」과 각종 특별법에 범죄로 규정된 불법도박을 저지르는 자로, 신고로 인한 보복의 두려움 외에도 본인이 처벌의 대상이 될 것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법도박의 신고율은 0.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됨¹³⁾.
- 이에 제정안은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신설 및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과 함께, 도박이용자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를 신고한 경우 그 도박이용자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진신고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수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다음과 같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경찰청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를 전담하는 별도의 센터를 신설하거나 신고 및 신고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 법률과의 관계 및 업무 중복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이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에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두고 있고, 같은 법에 사행성게임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사행산업 등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도박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¹⁴⁾

1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관련 입법례>

법명	관련 조문
사행산업 통합감독 위원회법	제18조의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등) ①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사무처에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의 조직·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사행산업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둘째, 제정안 제13조는 신고 대상을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 한정하고 있으나,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등도 그 대상으로 포함하여 지급정지 등 금융조치 뿐 아니라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비금융조치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대상을 보다 폭넓게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 2024년 10월 8일, 제77차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불법사행산업 신고포상금 3,669건(현장 신고 34건,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3,635건) 총 1억4천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셋째, 형의 감면과 관련하여, 불법도박 수사는 대부분 내부 신고자의 제보로 착수되기 때문에 신고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하기 위해 감면이 필요한 측면과 불법수익 및 운영자인 증거제공자에 대해서까지 벌칙 면제는 적정하지 않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형의 감면을 규정한 입법례로는 「형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형법」¹⁵⁾은 죄를 범한 후 자수한 자에 대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¹⁶⁾은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불공정거래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의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음.¹⁷⁾

15)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6)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③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1. 4. 20.>

④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4. 20.>

⑤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의2(형벌 등의 감면) ①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가 수사기

□ 마지막으로, 형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부칙에 적용
례를 마련하여 해당 규정이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
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하는지 여부 등을 명확하게 규
정할 필요가 있음.

관에 자수(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수사·재판절차에
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수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
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위반행위로 제429조의2제1
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 대하여 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18.]

**【참고자료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중 지급정지 관련 규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6.>

③ 수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6.>

④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6.>

⑤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 및 피해자·피해금의 통지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16.>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3. 5. 16., 2024. 2. 27.>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하며, 제3호에 따른 피해자에게

는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한다)
2.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자
3.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통지된 피해자
4.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5. 금융감독원
6. 수사기관.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절차·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종료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13.>

1.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의 개시
4. 질권(質權)의 설정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또는 피해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통지된 피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2023. 5. 16.>

③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에 한정한다.
3.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4.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13., 2024. 2. 27.>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한정한다)
2. 제7조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 다만, 명의인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명의인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104